

VII.

법령심사안의 작성 방법



01 편집용지의 규격 등

법령심사안은 한글76을 기본 워드프로세서로 하는 정부입법시스템의 법령안입안 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가. 편집용지의 기본 규격

- 1) 용지 크기 : A4(210mm×297mm)
- 2) 용지 방향 : 좁게
- 3) 용지 여백(F7)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16mm	16mm	25mm	25mm	12.7mm	12.7mm	0mm

나. 문단 모양(Alt+T)

1) 문단여백

문단여백(왼쪽·오른쪽·위쪽·아래쪽)은 모두 0.0pt로 한다.

2) 줄 간격

줄 간격은 230%를 기본으로 하되, 신·구조문대비표는 180%로 하고, 의결서 부분의 각 제목(의결주문·제안이유·주요내용·주요토의과제 및 참고사항)의 위, 법령의 제명 및 부칙의 위·아래, 편·장·절 제목의 위는 모두 460%로 한다.

3) 문단 정렬방식

법령 제명, 편·장·절의 제목, 부칙 제목 및 신·구조문대비표 제목은 가운데 정렬로 하고, 그 밖에 의결서 부분의 제목과 내용, 법령안의 공포번호 부분 및 내용 등은 양쪽 정렬로 한다.

76) 한글 2002 버전 5.7.6.3026 이상

4) 내어 쓰기 또는 들여 쓰기 기준

법령안의 경우는 조·항·호·목 등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내어 쓰기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6. 법령심사안의 작성 예시와 같다. 가운데 정렬 방식인 경우에는 내어 쓰기를 하지 않는다.

다. 글씨체 및 글씨크기 등(Alt+L)

글씨체 및 글씨크기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장평은 100%로, 자간은 0%로 설정한다.

글씨체 및 글씨크기	해당 부분
- 신명조, 14pt, 가는 글씨체	- 의결서 부분의 내용, 법령의 공포번호, 제정·개정 주문, 법령안 내용, 편·장·절의 제목, 개정지시문,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 부칙의 내용
- 신명조, 14pt, 진한 글씨체	- 부칙의 제목
- 신명조, 15pt, 진한 글씨체	- 표지의 내용(법령 제명 부분 제외), 의결서 부분의 제목
- 신명조, 16pt, 진한 글씨체	- 법령의 제명, 신·구조문대비표의 제목
- 신명조, 17pt, 진한 글씨체	- 표지의 법령 제명 부분

02 표지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령안의 표지는 6. 법령심사안의 작성 예시와 같이 작성하되, 의안번호, 의결 연월일 및 제출 연월일 중 월일에 해당하는 부분과 몇 회에 해당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에서 부여하므로 비워둔다.

표지의 제명 부분은 법령안의 제명과 같이 쓴다. 다만, 법령안의 제명이 한자로 되어 있더라도 표지 부분 및 의결서 부분의 제명은 한글로 표기한다.

제출자란에는 제출 법령안과 관련된 국무위원을 기재하고, 아래 부분에는 해당 장관의 명칭을 괄호 속에 명시한다. 다만, 제출자와 법령안 주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괄호 속에 어느 기관의 소관인지를 명시한다.

※ 법령안 제출자에 대한 자세한 표시방법은 p.52 이하를 참고하기 바람.

03 의결서 부분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령안의 의결서 부분은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토의 과제 및 참고사항으로 구분되며 상세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의결주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등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법령안의 제명이 한자로 되어 있더라도 표지 부분과 같이 한글로 표기한다.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총리령안·부령안 등의 경우에는 의결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나. 제안이유

해당 법령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하되,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7~8행을 넘지 않도록 함).

전술한 바와 같이 “제안”은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한다는 의미이므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총리령안·부령안 등의 경우에는 “제안이유”라고 하지 않고, “개정이유” 또는 “제정이유”로 표기한다.

제안이유 또는 제정·개정이유 부분은 법령을 제정·개정하게 된 동기를 나타내는 부분 이므로, 제정·개정의 주요 원인 1~2개만 기재하되, 필요 시 내용별로 단락을 나누거나, 개정원인, 개정내용, 개정효과로 단락을 나누어 기재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내용에서 다룰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작성해야 한다.

제정·개정의 주요 원인을 둘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는 “~하기 위하여(개정목적) ~하고(개정 내용),”라고 시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하기 위하여(개정목적) ~하며(개정내용),” 등으로 작성하고, “~하여(개정내용) ~하게 하고(개정효과),”라고 시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하여 (개정내용) ~하게 하며(개정효과),” 등으로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한다.

○ 예시 1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허가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예시 2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부동산인 공유재산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역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예시 3

우리나라의 보험규모는 총 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7위권의 보험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상법」의 보험편은 1991년 일부 개정 이후 전혀 손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따라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현행법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법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이유에 법률의 공포일 및 시행일을 명시하는 등 해당 하위법령안의 제정·개정 근거 및 법 시행일에 맞추어 제 때에 정비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법률 시행일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하위법령의 위임 근거조항의 시행일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해당 법률의 대부분(하위법령과 관계없는 부분)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부분이 있는 일부 조항이 늦게 시행될 경우에는 그 부분의 시행일(위임 사항이 있는 조항의 시행일)을 기재한다.

○ 예시 1

유치원의 장이 유아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1769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1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같은 연도에 공포 및 시행된 경우에는 시행일의 연도 표기 생략

○ 예시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하고 있던 국가 에너지정책 및 계획, 기술개발 규정 등 일부 내용을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800호, 2007. 12. 27. 공포, 2008. 8.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최근의 고유가 등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예시 3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중위생 향상 등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법인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대사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거나 해당 법인의 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을 하려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진료부(診療簿)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 사업 등 동물진료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시행일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법률 공포번호 및 공포일·시행일 표기 생략

다. 주요내용

주요내용은 가·나·다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간단하여 항목 구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리령·부령은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목 아래 일괄하여 기재할 수 있다. 항목별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내용을 요약하는 제목 및 해당 조문(안 제○○조)을 기재하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은 틀에 따라 세부항목을 나누어 기재한다.

- 첫째 세부항목: 해당 제도(정책) 도입의 배경이 되는 사항
- 둘째 세부항목: 해당 제도(정책)의 내용
- 셋째 세부항목: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만일 세부항목으로 나누는 것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나 내용이 간단하여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아니하더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항목의 제목은 기재해야 한다.

한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법안의 내용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1) 주요 내용은 한 가지 주제 단위로 작성한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개선사항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나누어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제도의 도입 후 변경되는 사항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예시

청사의 기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또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면적을 기준 면적에서 제외함.

⇒ 청사의 기준 면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하주차장 면적만을 기준 면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또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면적을 기준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핵심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쓴다.

문장 구조나 어순에 주의하여, 내용 전달에 혼란이 없도록 유의한다.

4) 내용 파악이 어려울 정도의 생략이나 약칭 사용을 하지 않는다.

법령의 본문에서 약칭된 용어를 제안이유·주요내용에서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시 식품명인제품에 대하여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의 조사 등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함.
⇒ 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한 식품명인제품에 대하여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의 조사 등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함.

5) 제안하는 법령 자체의 내용을 제시한다.

예시 국방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장려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함.
⇒ 장려금의 지급대상자는 필기시험 성적과 체력검정 결과 등을 평가하여 선발하도록 함.

주요내용 작성 예문

가.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또는 “○○제도의 폐지(현행 제○조 삭제)” 등으로 표현

1)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음.” 또는 “현행 ----는 ----하여 ----한 문제점이 있음.”
등으로 표현

※ 1) 항목의 기재방법

- 해당 제도(정책) 도입의 계기가 된 대통령지시, 정책방향의 변경, 상황변동, 특정 사건의 발생 등 해당 입법수요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항 기재
-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결정례의 요약, 통계자료 등 현황자료 인용, 특정사건의 경위, 사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요약하여 활용하도록 함.

2) “----하던 것을 ----하도록 함” 또는 “----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함.” 등으로 표현

※ 2) 항목의 기재방법

- 해당 제도(정책)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새로 도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내용을 기술함.

3) “----하게 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등으로 표현

※ 3) 항목의 기재방법

- 종전 제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적으로 또는 통계수치나 그 밖의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함.
- 앞에 “이와 같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방법도 효과적임.

나.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던 것을 -----하도록 함.”

※ 내용에 따라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작성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제목(“○○제도의 도입”)은 내용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해당 조문의 기재방법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작성 시 해당 조문 표기방법

○ 제정 또는 전부개정 법령안

- 모든 해당 조문을 “(안 제○조)”로 표기

○ 일부개정 법령안

- 하나의 조문을 열거하는 경우 : 해당조문 다음에 “신설” 또는 “삭제” 등 표기
 -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경우 : (안 제○조 신설)
 - 해당 조문이 삭제되는 경우 : (현행 제○조 삭제)
 - 해당 조문이 개정되는 경우 : (안 제○조)
- 여러 조문을 열거하는 경우
 - 동일하게 신설·삭제·개정되는 여러 조문을 열거하는 경우에는 맨 앞에만 “안” 또는 “현행”을 표기하고, 맨 뒤에만 “신설”·“삭제” 등 표기
 - 제1조, 제2조 신설 : (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
 - 제1조, 제2조 삭제 : (현행 제1조 및 제2조 삭제)
 - 제1조, 제2조 개정 : (안 제1조 및 제2조)
 - 신설·삭제·개정되는 복수의 조문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신설·삭제·개정되는 각 조문이 구분되도록 “안”을 별도로 표기하며, 쉼표(,)로 구분
 - 제1조 신설, 제2조 개정 : (안 제1조 신설, 안 제2조)
 - 제1조 신설, 제2조 삭제 : (안 제1조 신설, 현행 제2조 삭제)
 - 제1조 신설, 제2조 삭제, 제3조 개정 : (안 제1조 신설, 현행 제2조 삭제, 안 제3조)
 - 제1조 신설, 제2조 삭제, 제3조 개정, 제4조 신설, 제5조 삭제 : (안 제1조 및 제4조 신설, 현행 제2조 및 제5조 삭제, 안 제3조)
- 종전 부칙을 개정·삭제하는 경우
 - 부칙 제2조 개정 : (안 대통령령 제00000호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 부칙 제2조 삭제 : (대통령령 제00000호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삭제)

한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법령 홍보와 해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쉽고, 개정취지를 정확히 드러내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선 TF」(‘14. 3. 21.구성)에서 개선방향 및 사례를 마련하였는데, 개선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원칙

- ① 개선지침의 목적은 현행 작성방식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인 작성방식을 허용하려는 것임.
- ② 작성시 '합축성'보다 '명료성'에 중점을 두어, 법안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보다는, 개정 취지와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 ③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법안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함.

- ▶ 법안 전체를 아우르는 입법목적을 제안이유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제안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주요내용에서는 정책배경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음.
- ▶ 반면, 세부 정책별로 입법배경을 각각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내용에서 충분히 작성하고, 제안이유는 간략히 작성할 수 있음.

2. 제안이유

- ① 개조식 문장이 아닌 산문형 문장으로 작성하는 방식은 유지

- ▶ 개조식 서술은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보고서 형식에 적합한 것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보다 명확한 입법의도의 전달이 중요한 경우에는 부적합

- ② 제·개정의 주요 동기 1~2개를 기재하되, 법안 내용을 관통하는 정책 추진배경(현황, 사회적 문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

- ▶ 추상적·평면적 입법목적의 나열이 아닌,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관련 통계수치, 사례 등을 언급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
- ▶ 충분한 설명을 위해, 종전의 분량 제한(7~8행)이상 작성할 수 있으나, 가급적 1면을 넘지 않도록 작성하되, 필요시 더 길게 쓰는 것도 허용
-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1개의 긴 문장으로 이어 쓰는 관행에서 벗어나, 필요시 2~3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기재

- 다만, 주요내용에서 세부 정책별로 입법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제안이유에서는 이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배경을 간략히 기재하도록 함.

○ 예시 1 (정책 추진배경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설명)

〈현 행〉	〈개 선 안〉
<p>몰수·추징의 집행을 면탈하려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몰수·추징의 집행률이 저조한바, 불법 재산의 형성을 방지하고 추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의 집행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p>	<p>최근 5년간 약 4,747억 원의 추징금을 환수하였음에도,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납부 회피로 인하여 추징금 집행률은 1%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현행법상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거래 내역등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는 등 추징금 미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음.</p> <p>이에 따라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한 추징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지도층 등의 추징금 면탈행위에 엄정 대처하려는 것임.</p>

○ 예시 2 (정책의 사회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

이자제한법안(2007. 3. 29. 제정)
<p>이 법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비정상적인 고금리시기에 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를 배경으로 하여 지난 1998년 1월 13일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사채업의 폐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시 이 법을 제정하여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p>

③ 법령안의 용어와 표현보다 국민에게 익숙한 생활용어와 표현이 있으면, 이를 병기하여 이해를 도모

- ▶ 이 경우 해석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법령안의 용어와 정확히 대응될 수 있는 생활 용어와 표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기하도록 함.
- ▶ 해당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처음 1회에 한하여 병기하도록 하며, 2회부터는 법령안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작성예문

○ 예시 (생활용어 병기 및 대표적 사례 제시)

〈현 행〉	〈개 선 안〉
<p>현행법상 운전 중 <u>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u> <u>훈시 규정에 불과하여</u>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인바, <u>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시청행위 등의 대상 및 요건을 명확히 하고</u>,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 하도록 함으로써 영상물의 시청이나 기기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p>	<p>----- <u>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DMB)의 시청을</u> -----</p> <p>----- <u>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안내 영상 등 외의 다른 영상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고(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u>-----</p> <p>-----</p> <p>-----</p> <p>-----</p> <p>-----</p>

④ 어려운 용어의 보충설명을 위한 문장을 부기하거나 그림과 표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제안이유의 간결성을 해치므로 사용하지 않음.

- ▶ 다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보충설명 문장, 그림, 표 등을 제안이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① 종전의 작성방식의 기본틀을 유지하여, 항목의 제목을 기재하고, 3개 항목(정책 배경·내용·기대효과)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② ‘정책 배경’에는 제도 도입의 계기를 특정사건, 현황자료, 판례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되, 제안이유와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

작성예문

○ 예시 (현황제시를 통한 정책배경 설명)

〈현 행〉	〈개선안〉
<p>나. 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등 근거 마련(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 까지 신설)</p> <p>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등록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록취소, 자격검정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정지, 등록취소의 공고 등을 통하여 등록자격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p>	<p>나. 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마련(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p> <p>1) 다양한 민간자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정부의 간섭없이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민간 자격의 매년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과당 경쟁체제, 등록자격관리자의 영세성, 과도한 영리 추구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p> <p>2)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등록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록취소, 자격검정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정지, 등록취소의 공고 등을 통하여 등록자격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p> <p>3) 등록 민간자격의 책무성 제고 등으로 민간자격의 신뢰 및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p>

③ 법령안의 용어와 표현보다 국민에게 익숙한 생활용어와 표현이 있으면, 이를 병기하여 이해를 도모하고, 어려운 용어는 보충설명하는 문장을 부기하여 설명

- ▶ 이 경우 해석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법령안의 용어와 정확히 대응될 수 있는 생활 용어와 표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기하도록 함
- ▶ 해당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처음 1회에 한하여 병기하도록 하며, 2회부터는 법령안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 ▶ 보충설명을 위한 문장은 어려운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용어가 없는 경우로서, 전문적·기술적 용어 및 표현의 설명에 활용하도록 함.

○ 예시 (보충설명 문장의 활용)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2012. 11. 20. 시행)
<p>나. 준산업단지의 재정지원 확대(제10조의4제1호가목,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 신설)</p> <p>준산업단지*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준산업단지의 면적 요건을 1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7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되,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도 부담하도록 함.</p> <p style="padding-left: 20px;">* 준산업단지 :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정</p>
<p>마.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재정지원 확대(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 신설)</p> <p>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공장입지유도지구의 면적 요건을 3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1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되,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도록 함.</p> <p style="padding-left: 20px;">* 공장입지유도지구 :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개별공장의 공장설립을 촉진하면서도 친환경적·계획적 입지를 유도</p>

- ④ ‘정책 내용’에는 변경되는 제도는 변경 전·후를 대비하여 설명하는 경우, 세부 항목별로 전·후를 비교할 필요가 있으면 표를 활용
- 구역 표시, 동식물 종(種)의 설명, 서류의 기재 방법 등 그림을 통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경우 그림을 적극 활용

▶ 이 경우 제도 변경의 내용을 충분히 서술하여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그림 등의 시각적 기법은 설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함.

○ 예시 (변경제도의 내용을 표로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4. 1. 1. 시행)				
다.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및 임차인의 범위 확대(제10조 및 제11조)				
서울특별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2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에서 9천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소액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함.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구 분		주 택		
최우선변제 임차인의 범위	서울특별시	7,500만원	→	9,500만원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	8,000만원
	광역시 등**	5,500만원	→	6,0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	4,500만원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서울특별시	2,500만원	→	3,200만원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	2,700만원
	광역시 등**	1,900만원	→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	1,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해당 금액 이하 범위에 적용				

⑤ 주요내용은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도입되는 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계 조문은 통합하여 간략히 재구성하도록 함.

- ▶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허가 규정 및 취소·정지처분, 벌칙, 과태료 규정” 등 제도의 일체를 구성하는 조문을 통합하여 설명하도록 함.
- ▶ 이 경우, 설명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조문은 모두 “(안 제○○조)”로 제목 옆에 표시하여 이해를 도모하도록 함.

작성예문

○ 예시 (관계 조문을 통합하여 설명)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2015. 1. 1. 시행예정)
<p>나.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감독(안 제8조, 제11조 및 제13조)</p> <p>1) 현행 규정상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을 위한 자격기준이 공공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 규정되어 불분명하고, 자체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가 없어 한번 자체수리자가 되면 별도의 사후관리 없이 지속적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p> <p>2) 시·도지사는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자를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지정하고, 자체수리자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계량기 자체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수리자로 지정된 경우 자체수리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자체수리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함.</p>

⑥ 그 밖에 흔히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볼드(강조) 처리, 밑줄 등의 글자 모양을 변화시키는 편집방식은 사용하지 않음.

- ▶ 문자를 통한 의미 전달 외에, 편집 기법의 차이를 두어 의미를 강조하는 등의 경우, 이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라. 주요토의과제

주요토의과제는 국무회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1980년 8월 27일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다. 주요토의과제는 심사의뢰된 법령안에 대하여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 국무회의에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는 총리령안·부령안의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

주요토의과제를 활용한 주요사례

1. 신용관리기금법안(최초 사례, 1982년):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 수혜자의 범위에 관한 재무부 의견에 대하여 소관 법제관의 문제 제기
2. 지방세법안(1995년):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 및 내무부 간 이견
3. 은행법안(1996년): 합작은행 등의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외국인 및 내국인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재정경제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간 이견
4. 출입국관리법안(1996년):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신설문제와 관련 재경부·법무부·노동부 및 중소기업청 간 이견
5. 공무원수당규정안(1998년): 국가경제위기로 고등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기말수당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바, 이 경우 퇴직연금 및 일시금 산정을 삭감 전의 기말수당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삭감 후의 기말수당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간 이견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안(2002년 12월): 국토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보조에 관한 규정의 강행규정화 문제에 대하여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간 이견
7.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안(2003년 7월): 시간제 근로자 및 시간강사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포함 여부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간 이견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2004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중등교원 봉급분에 대한 부담주체를 국가로 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특히 서울특별시) 간 이견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07년 1월): 대국민 행정작용 및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리적인 문제를 법제처에서 제기
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8년 11월): 특별교부세의 지원 대상에 국가적 장려사업 등 시책 사업을 추가하는 것과 도로보전분 지원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간 이견

11.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2011년 10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도입되는 경관 심의제도가 환경성평가제도와 중복되므로 환경성평가제도의 대상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간 이견

법제(심의)관은 해당 법령안 중 중요한 쟁점이 있어 국무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결론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토의과제를 붙여 국무회의·차관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법제(심의)관은 ①에 해당하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요토의과제를 붙이도록 한다.

주요토의과제 작성 기준

- ① 관련 입법절차를 마치고 법제처에 심사의뢰된 이후 3개월 이상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심사가 보류되어 있는 법령안
- ② 관련 입법절차를 마치고 법제처에 심사의뢰된 이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심사가 보류되어 있는 법령안
- ③ 국회 제출기한이 정하여진 법률안, 조약과 그 밖에 외국·국제기구와의 합의 등에 따라 입법시한이 정하여진 법률안 또는 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으로서, 법령안 주관기관과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이 지연되면 적기 국회제출이나 시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안
- ④ 법령안 주관기관의 원안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와 법령안 주관기관 간, 법령안 주관기관과 관계 기관 간 이견이 있는 법령안
- ⑤ 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에 준하는 법령안으로서 처장이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령안

주요토의과제 작성 시에는 의결서 부분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주요토의과제 작성방법에 따라 주요토의과제(붙임 제25호서식)를 작성하여 별첨으로 첨부하도록 한다.

주요토의과제가 없는 경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주요토의과제가 있는 경우

4. 주요토의과제

별첨 1(제○쪽 ~ 제○쪽)

주요토의과제 작성 방법

- ① 법제(심의)관은 주요토의과제를 작성할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쟁점 사항이나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이 명료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 ② 법제(심의)관은 주요토의과제를 작성할 때에 필요하면 법제합의부 또는 법령안 합동 심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③ 주요토의과제의 형식은 붙임 제25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법제(심의)관은 필요한 경우 작성항목을 변경하거나 가감할 수 있음.

마. 참고사항

이 부분에는 관계법령, 예산조치 내용, 관계부처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신·구 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법령안의 심의·의결에 참고가 될 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1) 관계법령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재한다.

관계법령을 기재하는 경우

- ① 해당 법령안의 입법추진 배경이나 관련 업무의 처리방향을 정하고 있는 경우
예) 해당 법령 제정·개정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령·조약이 있는 경우 배경이 된 법령·조약의 관련 규정, 법률 공포안에서 법률 공포 및 재의요구 등에 관한 헌법 제56조 등

- ② 해당 법령의 입법형식·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등
- ③ 해당 법령의 제정·개정 내용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규정이 있는 경우
- ④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논의 가능성이 있거나 논의 필요성이 있는 내용과 관련되는 관계 법령 규정. 다만, 별도의 주요토의과제를 붙이는 경우 그 주요토의과제와 관련되는 관계 법령은 해당 주요토의과제에 기재한다.
- ⑤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에서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른 경우 모법의 시행일 규정
- ⑥ 그 밖에 법제(심의)관이 해당 안건의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법령 규정

관계법령의 기재 분량이 1/2쪽 이하인 경우 해당 관계법령란에 기재하고, 관계법령의 기재 분량이 1/2쪽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란에 다음과 같이 표시(해당 쪽도 기재)하고, 관계법령을 별첨자료로 만들어 법령안건에 붙인다.

기재분량이 1/2쪽 이하인 경우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⑥ (생략)

기재분량이 1/2쪽 이상인 경우

가. 관계법령 : ○○법 등, 별첨 1(제○쪽 ~ 제○쪽)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모법의 시행일 규정이 조문별로 달라서 관계법령으로 모법의 시행일 규정과 다른 법령을 같이 기재하는 경우에는 모법의 시행일 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관계법령을 기재하도록 한다.

2) 예산조치

해당 법령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별도조치 필요 없음”,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 “○○○○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년도 예비비에서 집행할 계획임” 등 해당 법령의 시행에 관련되는 예산 조치 내역을 기재한다. 예산조치에서 “비용추계서 별첨”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예산조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 예시 1

나. 예산조치

- 1) 지원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 2) 지원금은 ----계획에 반영하기로 함(반영할 예정임)

○ 예시 2

나. 예산조치

- 1) 이 영 시행 후 금년말까지 교대제전환지원금 등에 필요한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11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임
- 2) 2011년 교대제전환지원금 등에 필요한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회 심의를 받아 201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영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 별도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는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소관부처에서 작성

3) 합의

법령안의 내용이 특정 부처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합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합의된 부처를 명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부처의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의 순서에 따른다. 부처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처합의 필요 사항

1.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공공요금, 수수료, 그 밖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물가와 관련이 있는 사항, 예산 또는 조직에 관한 법률, 회계에 관한 법률
2. 행정안전부: 정부조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3. 인사혁신처: 정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 관계 법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감사원: 「감사원법」 제49조의 회계 관계 법령안
5. 법무부: 벌칙에 관한 사항
6. 해당 부처: 「정부조직법」상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7. 국회: 국회에 제출하는 안건(연차보고서 등)의 제출방법 변경 등 국회와 관련이 있는 사항

4) 기타

이 부분에는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가)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자료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으로 기재하되, 별첨자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제○쪽 ~ 제○쪽)”으로 기재한다.

직제 시행규칙의 별표 중 정원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신·구정원대비표를 첨부한다.

신·구조문대비표(또는 신·구정원대비표)만 있는 경우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또는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신·구조문대비표와 신·구정원대비표가 둘 다 있는 경우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제○쪽 ~ 제○쪽)

나) 입법예고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기간 및 특기사항 여부를 기재하도록 한다.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라. 기 타 : 2) 입법예고(2025. 7. 4. ~ 8.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 타 : 2) 입법예고(2025. 7. 4. ~ 8. 13.) 결과, 별첨 ○(제○쪽 ~ 제○쪽)

※ 재입법예고를 한 경우, 궐호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재입법예고 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예시) 입법예고(2025. 7. 4. ~ 8. 13., 8. 20. ~ 9. 5.)

다) 행정규제⁷⁷⁾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기재한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가 신설·강화·폐지 및 완화되는 수를 각각 기재하되, 신설·강화의 경우에는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규제를 신설·강화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그 목적을 병기한다.

규제의 신설·강화·폐지 또는 완화가 없는 경우(적용제외 분야인 경우 포함)에는 행정규제에 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

77) 종전에는 명칭을 “규제심사”로 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중요규제의 신설·강화(「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제12조) 건수만 표시했으나, 법령안의 규제 관련 내용을 충실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2008년 7월부터 명칭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로부터 중립적인 “행정규제”로 바꾸고, 기재대상도 신설·강화·폐지·완화되는 모든 규제로 확대하였다.

신설·강화·폐지·완화 규제가 있는 경우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된 경우

라. 기 타 :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건(대기환경보전 강화)
 - 규제 강화 ○건(국민건강 보호)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상세설명에는 규제의 내용이 아니라 규제의 목적 기재
(예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강화(○)

○ 규제개혁위원회와 이견이 있는 경우

라. 기 타 :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견, 별첨
 - 규제 신설 ○건(대기환경보전 강화)
 - 규제 강화 ○건(국민건강 보호)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신설·강화 규제가 없고, 폐지·완화 규제만 있는 경우

라. 기 타 :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대상 규제가 없는 경우 : 기재 안함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에 관한 법령안에 대해서는 규제심사를 하지 않는다.

규제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병역법」·「통합방위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6. 군사시설·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라) 국회제출 법률안의 심사참고사항

국회제출 법률안으로서 다른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그 다른 법률이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으나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각 조문을 전부개정(대부분의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요청하는 경우⁷⁸⁾ 등에는 참고사항의 마지막 항목으로 아래 예문을 기재하도록 한다.

다른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경우

라. 기 타 :

- 4)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78)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세입예산안과 함께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고, 지정된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동시에 심사가 끝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주로 세법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용어 정의나 국회의 기준이 없어 2014년에는 세법안 외에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7. 30 제출, 기금 관련), 「지방세법」(9. 22 제출, 담배세 관련 「개별소비세법」과 같이 의결 필요), 「국민건강증진법」(9. 22 제출, 담배세 관련 「개별소비세법」과 같이 의결 필요), 「국민체육진흥법」(10. 10 제출, 기금 관련)이 국회의와의 협의(국회사무처 의안과)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요청 사항을 참고사항에 기재하여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4년 11월 27일 지정되었다.

※ 만일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날짜를 명시하여 관련된 법률안을 특정해야 함.

- “이 법률안은 2024년 11월 1일 국회에 제출된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

○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라. 기 타:

4)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이 이미 제출된 경우와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혼재된 경우**

라. 기 타:

4)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이 향후 제출(정부 제출만 해당) 예정인 경우**

라. 기 타:

4) 이 법률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 예정인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국회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경우**

라. 기 타:

4) 이 법률안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법률의 경우

라. 기 타 :

- 4)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라. 기 타 :

- 4)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조제○항 및 제○조제○항)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요청하는 경우

라. 기 타 :

-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000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04 법령안

법령안은 제정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의 종류 및 공포번호 부분, 법령의 제명, 본칙, 부칙, 별표 및 별지서식으로 구성되고, 개정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의 종류 및 공포번호 부분, 법령의 제명, 개정주문(「법령 입안·심사 기준」에서는 “개정지시문”이라 한다), 본칙(개정문), 부칙, 별표 및 별지서식으로 구성되며, 폐지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의 종류 및 공포번호 부분, 법령의 제명, 폐지주문 및 부칙으로 구성된다.

종전 법령의 본칙뿐만 아니라 부칙이나 별표 또는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본칙에서 개정문을 작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부칙에서 개정문을 작성한다.

법령안 내용의 작성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른다.

05 신·구조문대비표 등의 첨부

일부개정 법령안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과 개정 규정을 대비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직제 또는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를 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붙인다. 다만, 별표나 별지서식의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의 경우에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이지 않는다. 그 밖에 입법예고 결과 등 법령안에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첨으로 첨부한다.

첨부물을 둘 이상 붙일 경우의 첨부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주요토의과제, ② 관계법령, ③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④ 입법예고 결과, ⑤ 그 밖의 첨부물

아울러 둘 이상의 첨부물을 붙이는 경우에는 의결서 부분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를 표시하고, 각각의 첨부물 좌측 상단에도 [별첨 1], [별첨 2], [별첨 3] 등의 첨부물 표시를 한다. 다른 첨부물이 없고 오직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만 첨부하는 경우에는 첨부물 표시를 하지 않는다.

4. 주요토의과제

별첨 1(제○쪽 ~ 제○쪽)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 별첨 2(제○쪽 ~ 제○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제○쪽 ~ 제○쪽)

2) 입법예고(2014. ○. ○. ~ ○. ○.) 결과, 별첨 4(제○쪽 ~ 제○쪽)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건(○○보호 강화)

- 규제 완화 ○건

가. 표지⁷⁹⁾

의안번호	제vvvvvv호	의 결 사 항
의vvvvvv결	20vv.vvvv.vvvv.	
연vv월vv일	(제vvvv회)	

(신명조 15pt, 진하게, 줄간격 160%)

하 천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신명조 17pt, 진하게, 가운데정렬, 자간 47%, 줄간격 160%, 안 여백 위아래·좌우 5mm)

제vv출vv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제출v연월일	20vv.vvvv.vvvv.

(신명조 15pt, 진하게, 줄간격 160%)

법제처 심사를 마칩

(신명조 15pt, 진하게)

79) 법령안건 표지는 정부입법시스템의 법령안입안편집기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한다.

나. 의결서 부분

1. 의결주문 ≡ 신명조 15pt, 진하게

≡ 신명조 14pt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Enter 14pt

2. 제안이유 ≡ 신명조 15pt, 진하게

≡ 신명조 14pt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nter 14pt

3. 주요내용 ≡ 신명조 15pt, 진하게

≡ Shift+Tap, 신명조 14pt

가. 매수청구의 대상 확대(안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 Shift+Tap, 신명조 14pt

1)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토지 외에 건축물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토지 외에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하천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함.

나.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의 폐지(현행 제89조 삭제)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행위허가 등과 관련 하여 납부하던 허가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

Enter 14pt

4. 주요토의과제 ≡ 신명조 15pt, 진하게

없음 ≡ 신명조 14pt

Enter 14pt

5. 참고사항 ≡ 신명조 15pt, 진하게

가. 관계법령: 생략 ≡ 신명조 14pt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를: 해당기관 없음

라. 기안(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신명조 14pt

2) 입법예고(2023. 8. 28. ~ 9.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Shift+Tap, 신명조 14pt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규제 신설 1건(-----)

≡ Shift+Tap, 신명조 14pt

≡ 신명조 14pt

※ 기타 항목이 하나인 경우

라. 기안(입법예고(2023. 8. 28. ~ 9.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Shift+Tap, 신명조 14pt

다. 법령안

법률 제 0000000호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신명조 14pt)

Enter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nter ↵

(법률제명: 가운데 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주문: 신명조 14pt)

제7조 본문 중 “7일내”를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문: 신명조 14pt)

(이하 생략)

Enter ↵

부 칙

Enter ↵

(부칙: 가운데 정렬, 신명조 14pt, 진하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명조 14pt

☆ 조·항·호·목 등의 내어 쓰기 기준

제00조(○○○○) ① -----
← Shift+Tap 또는 첫줄 내어 쓰기 14pt
-----.

vv ② -----
← Shift+Tap 또는 첫줄 내어 쓰기 14pt
-----.

vv 1. -----
← Shift+Tap 또는 첫줄 내어 쓰기 24.4pt
-----.

vvvv 가. -----
← Shift+Tap 또는 첫줄 내어 쓰기 45.4pt
-----.

vvvvv 1) -----
← Shift+Tap 또는 첫줄 내어 쓰기 54.2pt
-----.

vvvvvvvv가) |-----
 ← Shift+Tap 또는 첫줄 내어 쓰기 75.2pt
 |-----.

vvvvvvvv(1) |-----
 ← Shift+Tap 또는 첫줄 내어 쓰기 87.8pt
 |-----.

vvvvvvvvvv(가) |-----
 ← Shift+Tap 또는 첫줄 내어 쓰기 108.8pt
 |-----.

☆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할 경우의 내어 쓰기 기준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vv 제00조를 삭제한다.

vv 제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vv 제00조(○○○○○) ① |-----
 ← Shift+Tap
 |-----.

vvv ② |-----
 ← Shift+Tap
 |-----.

vv 제0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vvv ④ |-----
 ← Shift+Tap
 |-----.

vv 제0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vvv |-----
 ← Shift+Tap
 |-----.

※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라. 첨부

1) 주요토의과제

[별첨 1]

주요토의과제

1. 토의과제

- 특례규정(현행 제12조제2항)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에서는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직접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이를 종전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부담할 것인지 여부(안 제11조 관련)

2. 원안의 내용

- 원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오던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부담분을 폐지하되, 동 규모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세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계속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현행 3.6%에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는 10%, 기타 광역시·경기도는 5%로 인상하고 그 밖의 도는 현행대로 3.6%로 유지).

3. 원안에 대한 관련부처 의견

가. 행정안전부의 의견

- 특례규정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가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직접 부담하여 왔으나, 2005년 이후는 특례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중앙정부가 부담하여야 하며,
- 또한 공립중학교의 교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고, 의무교육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
- 따라서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의 해당 금액만큼 시·도세 비율을 인하해줄 것을 요구(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10%를 6.3%로, 기타 광역시와 경기도는 5%를 4.3%로 인하·조정요구)

나. 교육과학기술부 및 기획재정부의 의견

-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직접 부담하여 왔으나, 2005년 이후의 재원분담에 대해서는 2001년 동법 개정 당시 관계부처 간 협의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법을 다시 개정하기로 하였고,

-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의 부담은 국가의 재정구조, 지방자치제도 등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음.
- 또한,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로서 공립교원은 실제 지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교육감이 시·도전입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도 이미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도 동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부담해 온 시지역 공립중학교 교원의 봉급을 시·도세에 반영하여야 함.

4.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의 봉급전입금 및 시·도세 전입금부담 (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p>비의무학교 교원의 봉급전입금 (서울 100%, 부산 50%, 5개 광역시와 경기도 10%)</p> <p>시지역 공립중학교 교원의 봉급전입금 (서울 100%, 부산 50%, 5개 광역시와 경기도 10%)</p> <p>시·도세 전입금 (시·도세 총액의 3.6%)</p>	<p style="text-align: center;">⇒ (봉급전입금 폐지 및 시·도세 비율조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세 비율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부산시 : 시세 10% - 5개 광역시 및 경기도 : 시·도세 5% - 기타 도 : 도세 3.6%
<p>지방교육세 전입금 (특별시, 광역시, 도 : 지방교육세 전액)</p> <p>담배소비세 전입금 (특별시, 광역시 : 담배소비세의 45%)</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 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원 봉급전입금 예산 규모 : 3,932억원('04)

나. 현행규정(제12조제2항)

- 2002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준(위의 음영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별첨 2]

관계 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①자연재해·병충해 발생 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 별표 1의 다 및 별표 3의 다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3]

신·구조문대비표

(제목: 가운데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현VVVVVVVVV행	개VVV정VVV안
第7條(送達遲延으로 인한 納付期限의 延長) 納稅告知書·納付通知書·督促狀 또는 納付催告書を 送達한 경우에 到達한 날에 이미 納付期限이 경과하였거나 到達한 날로부터 7日내에 納付期限이 到來하는 것에 대하여는 到達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納付期限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告知의 경우 당해 告知書가 到達한 날에 이미 納付期限이 경과한 때에는 그 到達한 날을 納付期限으로 하고, 당해 告知書의 到達후 納付期限이 到來하는 때에는 그 到來하는 날을 納付期限으로 한다.	第7條(送達遲延으로 인한 納付期限의 延長) --- ----- ----- ----- 14일 이내- ----- ----- ----- ----- ----- ----- ----- -----

- 1) 신·구조문대비표는 신명조, 14pt, 줄 간격 180%로 작성하고, 내어 쓰기는 법령안의 내어 쓰기 기준에 따른다.
- 2)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 3) 일괄개정 등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는 단어의 중간이 나뉘어서 줄바꿈되거나 다른 단어와 같은 줄에 쓰이지 않도록 하고, 줄 간격은 180%로 한다.

〈예시〉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사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7]

(제목: 가운데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56</u>	<u>975</u>	+19
·	·	·	
일반직 계	<u>906</u>	<u>926</u>	+20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56</u>	<u>55</u>	-1
·	·	·	
·	·	·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u>서기관 또는 철도공안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	·	·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	·	·	

1) 개정사항이 없는 직급별란이 1개일 때에는 생략줄을 한 개만 표시하고, 개정사항이 없는 직급별란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생략줄을 두 개로 표시한다.

2) 신설하는 직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위치를 설명(“~~ 다음에” 또는 “~~ 앞에”)하는 기준이 되는 직급별란은 생략하지 않고 쓴다.

※ 신설하는 위치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는 줄은 통상 신설하는 위치 바로 앞의 직급을 인용(~~ 다음에 ~~를 신설하고)하지만, 그 직급에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위치 뒤의 직급을 인용(~~ 앞에 ~~를 신설하고)한다.

3) 직급명칭이 두 줄 이상 넘어갈 때에는 두 번째 줄 이하는 첫 줄 첫 글자 끝에 맞추어 정렬하고, 그 직급에 상응하는 변동내역(현행, 개정안, 증감 란)은 직급명칭 맨 마지막 줄에 맞추어 쓴다.

4) 입법예고 결과

[별첨 4]

[입법예고결과]

제출자	내 용	조 치 결 과
○○ 연 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대한 규제 완화 반대(안 제38조의2)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일지라도 무분별한 매립의 방지를 위하여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소규모의 해안도로 및 마을공동작업장 등의 축조를 위하여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이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허가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되, 국민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규모매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필요함.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항만구역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지방이양 반대(안 제9조 등) - 중앙행정기관이 가진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에 관한 권한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오히려 강화 또는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반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대상사무로 확정된 사항이며,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매립면허 등에 관한 권한이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미 위임되어 행사되어 왔음.

※ (참고양식) 비용추계서

○○○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연평균
지출	○								
	○								
	소 계(A)								
수입	○	△							
	○	△							
	소 계(B)	△							
총 비용(A-B)									

〈작성방법〉

- 위 표에 따라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증감액을 재정수반요인별로 구분하여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단위: 백만원 또는 억원 중 선택하여 기재)
- 추계기간: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정수반요인별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않고 각각 기재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작성방법〉

- 재정수반요인이 있는 조·항 등에 대하여 각 조·항 등별로 주요내용을 설명(조·항 등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별도 항목별로 분류)
- 재정수반요인이 있으면 추계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열거
- ※ 재정수반요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작성방법〉

- 각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실시 여부 및 추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등 기재
- 추계 미실시 사유: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기존 실시 중인 사업의 명문화(기존사업명을 함께 기재)' 등 추계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

〈작성방법〉

- 비용추계 전반에 대한 전제사항 등을 기재
 -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의안의 시행시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
○

〈작성방법〉

- 의안의 심의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II. 재정수반요인」에 기재된 각 재정수반요인별로 상세한 추계내역을 기재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재정수반요인별로 추계에 활용된 통계자료와 그 출처, 추계의 근거, 추계의 전제·가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시행일부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으면 별도로 추계 가능
-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추계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범위로 기재 가능

IV. 부대의견

○

〈작성방법〉

- 비용추계서를 활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포함) 등을 기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재

V.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 연 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회계·기금 간 전입						
◦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 기타						
〈합 계〉						

〈작성방법〉

- 위 표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항목별(「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참조)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단위: 백만원 또는 억원 중 선택하여 기재)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예산안 편성 등이 필요하나 그 재원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 항목에 기재
- 회계·기금 간 전입: 정부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조달
-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지출(조세감면) 구조조정, 예산 이용·전용 등
- 기타: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재원 등 기타사항이 있으면 기재
- 총 재원조달금액(합계)은 비용추계서에서 추계된 총 비용과 같은 금액이 되도록 기재
- 기간: 비용추계서의 추계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기재

II.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합 계〉							

〈작성방법〉

- 위 표에 따라 재원부담 주체별 및 회계·기금별 재원조달방안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단위: 백만원 또는 억원 중 선택하여 기재)
- 총 재원조달금액은 비용추계서에서 추계된 총 비용과 상응하는 규모로 기재
- 기간: 비용추계서의 추계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기재

III.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

○

〈작성방법〉

①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조세수입 등 재정수입 신규 창출 또는 확대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과 금액 기재
- 세수증대효과 등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치화(특정금액 또는 범위 등)하여 기재
- 재정수입 창출이 없는 경우 국채발행·차입 등 개략적인 계획·방안 기재
- 구체적인 방안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개략적인 계획·방안 기재

② 회계·기금 간 전입

- 정부 내부거래로 회계·기금의 여유자원 등을 활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방안 기재

③ 기존 예산·기금 항목 간 조정

- 지출사업의 조정 또는 조세감면제도의 조정(축소·폐지)이 있으면 그 내용(계획 포함)과 해당 금액 기재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과정에서 실시된 구조조정 사항 기재 가능
- 예산 이용·전용 등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추진계획·확정)
- 조세감면 관련 의안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88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충방안을 기재 가능

④ 기타: 그 밖에 중앙정부 자원조달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

⑤ 공통사항: 위 ①~④ 항목과 별도로 예산안 편성 관련 다음 사항을 함께 기재

- 정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내용(「국가재정법」 제33조 및 제68조)
- 중앙관서별 예산요구서(기금운용계획안) 포함 내용(「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제66조)
- 중기사업계획서 내용(「국가재정법」 제28조 및 제66조)
- 예비비 신청·확정 내용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내용
- 그 밖에 의안을 소관하는 부처의 예산요구 계획 등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자원조달 방안

-
-
-

〈작성방법〉

-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자원조달 방안'에 준하여 기재(①~⑤ 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로 기재
 - 국비와 지방비 분담계획이 있을 경우 그 분담비율 및 금액을 기재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계획이 있을 경우 그 분담비율 및 금액을 기재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특이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기재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

〈작성방법〉

- 공공기관, 민간 등 기타 분야의 재원분담계획이 있다면 기재 가능

IV. 부대의견

○

〈작성방법〉

- 재원조달방안을 활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기재
-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내용 기재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작성방법〉

- 「국가재정법」 제87조에 따라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와 실시한 협의·재협의 내용 기재
- 협의시점: 최종 협의를 실시한 연, 월
- 협의기관: 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계기관 등
- 협의·재협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및 그 사유와 향후 계획 기재

VI.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6]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작성방법>

- 재정수반요인이 있는 조·항 등에 대하여 각 조·항 등별로 조제목과 주요내용을 설명(조·항 등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별도 항목별로 분류)
- 재정수반요인이 있으면 추계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열거식으로 작성
- ※ 재정수반요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제2항()	제1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2	안 제7조()	제2호: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

〈작성방법〉

- 각 재정수반요인별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 중 선택하여 호 번호 및 해당사유 기재

2. 상세 사유

-
-
-

〈작성방법〉

- 각 재정수반요인별로 미첨부 사유를 상세히 기재
- 제1호의 경우 실제 예상되는 비용(단위: 백만원)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
- 제2호의 경우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련되는 사유와 관련 자료를 기재
- 제3호의 경우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자료를 기재
- 기존사업을 명문화(추가재정소요 없음)한 사항이 있으면 기존 사업명을 기재
- 그 밖에 효과적인 의안심사를 위한 참고자료가 있으면 기재

Ⅲ. 부대의견

-

〈작성방법〉

- 미첨부 사유서를 활용함에 있어서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이 있으면 기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재

Ⅳ.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미첨부사유서 제출여부 판단 시 유의사항>

- ※ 재정수반요인이 전혀 없는 의안은 미첨부사유서 제출 불필요
- ※ 기존사업을 명문화한 사항만 있는 경우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안의 '참고사항'으로 기재
- ※ 기존사업을 명문화한 사항과 재정수반요인이 함께 있는 경우 미첨부사유서 또는 비용추계서 제출